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1.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10월 14일, 이수진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10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5.11.14.)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1.1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2025.11.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수진의원)

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서 국민 모두가 사는 곳에 관계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함. 그런데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

형이 심화되며 지역 간 보건의료의 질뿐만 아니라 제때 진료 및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마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의료인력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지역의를 국가적으로 양성·지원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의료인력이 필요한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정책이 실효적인 대안으로 주목되고 있음.

이에 미국, 호주, 일본 등 해외의 정책을 참고하여 대학 입학 전형을 통해 복무형 지역의를 선발·육성하여 10년의 기간 동안 지역의 의료기관에 배치·복무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통해 정하는 지역의 의료기관에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의사로서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 및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에 따라 검토보고 없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 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고, 이를 통해 선발되어 의사 면허를 취득한 “복무형 지역 의사”는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형 지역 의사”를 함께 규정하면서, 지역 의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